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동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8 - 66
----------	-----------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최동철, 황동현, 김성한, 신낙형
이충숙, 이종숙, 윤유선, 정정희
송영섭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해당 조례를 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정비 및 보조금 지원 대상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추가(안 제5조)
- 나.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고 조항 추가하여 보조금 사용 책임의 명확화(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17조」

가.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8. 10. 29. ~ 11. 5. “의견 없음”

2) 개정안 및 관계법령 : 붙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업”을 “사업 등”으로 한다.

제3조 중 “재향군인에게” 앞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을 삽입한다.

제4조 중 “사업”을 “사업 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대상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제5조 본문 중 “법 제16조 제3항”을 “법 제16조 제2항”으로 하며 “사업”을 “사항”으로 한다.

제5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향군인회 운영비

제6조의 제목 “지원신청”을 “지원신청 및 보고”로 하고

제6조의 본문을 제6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 ----- <u>사업</u>을 -----.</p> <p>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p> <p>제4조(예산지원) ----- ----- <u>사업</u>에 ----- ----- -----.</p> <p>제5조(지원대상사업) <u>법 제16조 제3항</u>의 규정에 -----<u>사업</u>은-----.</p> <p>1. ~ 4. (생략) <신설> 5. (생략)</p> <p>제6조(지원신청) ----- -----.</p> <p><신설></p>	<p>제1조(목적) ----- ----- <u>사업</u> 등을-----.</p> <p>제3조(예우) <u>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u> (이하 “<u>구청장</u>”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p> <p>제4조(예산지원) ----- ----- <u>사업</u> 등에 ----- ----- -----.</p> <p>제5조(지원대상) <u>법 제16조 제2항</u>의 규정에 -----<u>사항</u>은-----.</p> <p>1. ~ 4. (현행과 같음) 5. 재향군인회 운영비 6.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p> <p>②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05.29.>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